

<붙임 2>

2024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4. 5. 23.



목 차

1. 사업 개요	5
2. 사업 신청	7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0
4. 사업 관리	11
5. 완료 보고	12
[붙임 1]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신청 서식	13
[붙임 2] 용자 예비승인서	15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다량 배출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하여 국가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

나. 추진일정

- (용자접수) 2024년 5월 27일(월) ~ 11월 1일(금)(18시까지, 상시 접수)
- (심사)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 (결과통보) 주간 접수 마감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0일영업일 이내
※ 과다한 용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 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제23조(용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용자 및 접수 규모

지원분야	용자규모	접수한도
미세먼지저감시설자금	800억 원	1,000억 원

※ 접수 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라. 용자금 사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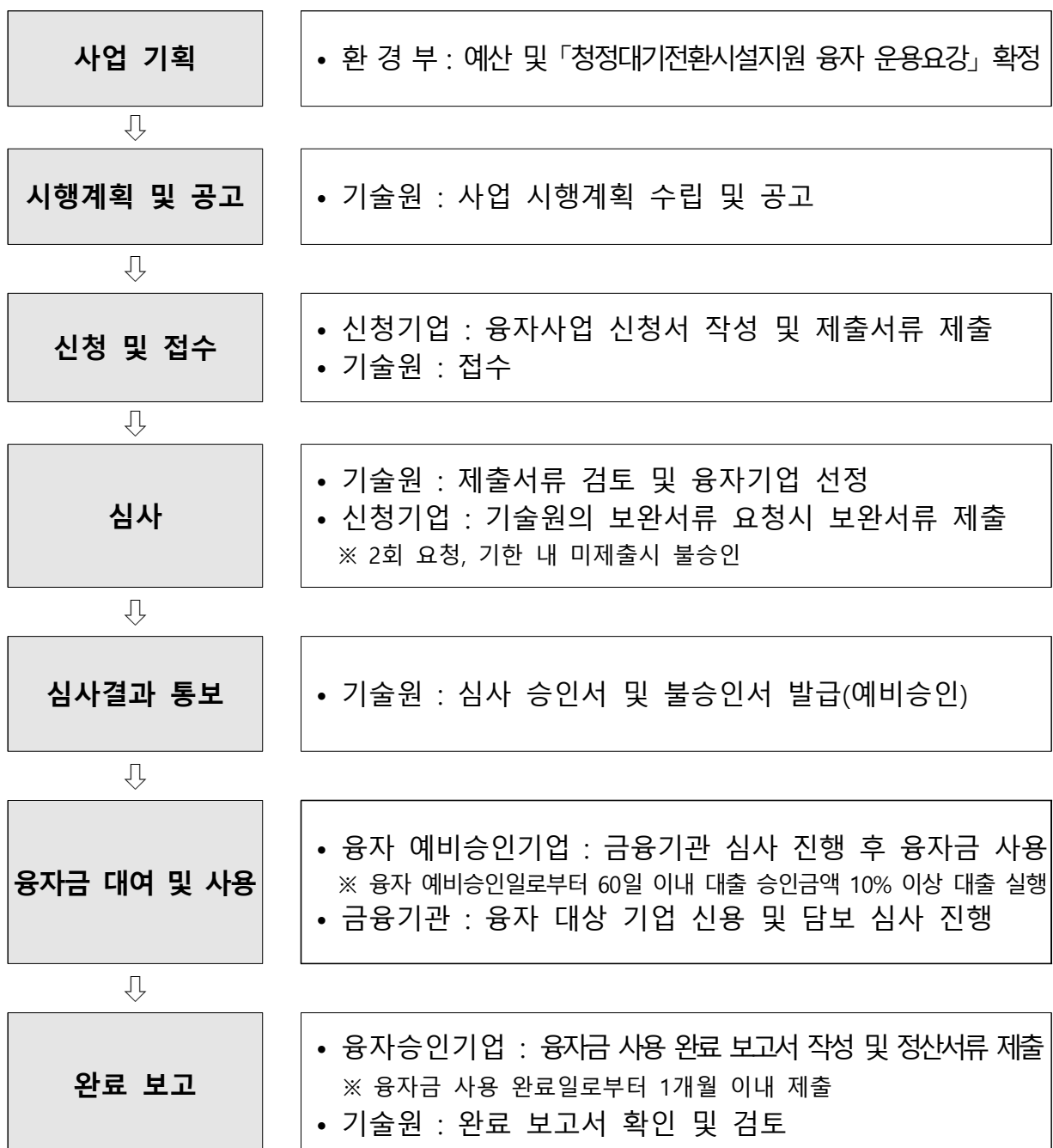
-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 용자금 사용기간 연장 불가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용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4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바.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시멘트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석유정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철업

나. 신청 제외 대상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용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용자신청이 가능하다.
 - 과거 1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10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의 사업장 조업·영업 중지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과거 1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등의 처벌을 받은 사업자
 - 제25조의 용자 예비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5조제1항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용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0조제3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 취소(최초인출기간 도과)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0조제3항의 조치(일부 포기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용자금 사용기간 도과) 사업자로, 용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 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제4항 시설
 - 용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 직전 연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하여 용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 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로 용자 지원이 가능한 대금 잔액이 남거나 행정적 철자(지자체 허가 등)가 남은 시설 포함
- (지원제외)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제3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용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용자조건)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한도 제한없음
※ 대출기간 연장 불가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www.ecosq.or.kr>, 에코스퀘어)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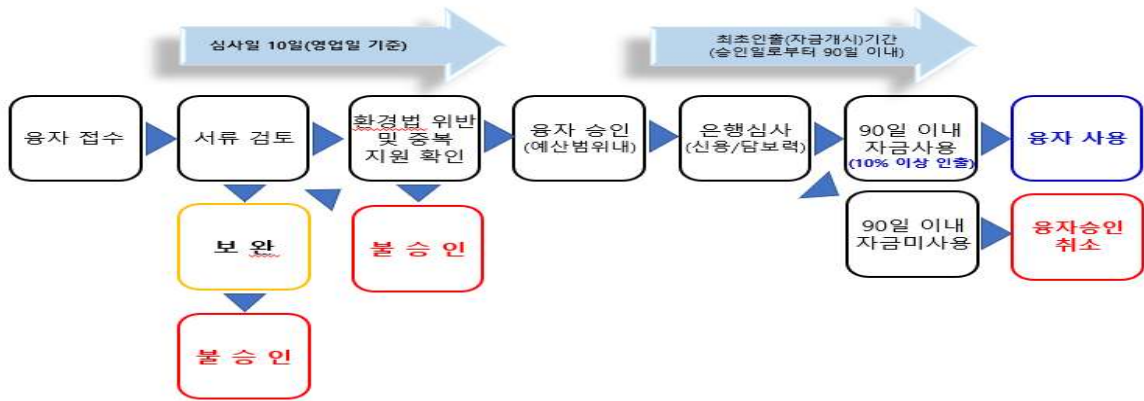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 하여 직접 발급 제출 - 이때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2 (필수)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3 (필수)	시공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 시공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4 (필수)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별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를 견적서 인정) • 자가 시공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5 (필수)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6 (선택)	건축 허가서 (건축물 신청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용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7 (선택)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바. 주요 기타사항

- (서류제출 기간) 용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을 따름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용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주간 접수 마감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 용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10영업일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용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 기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 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여부 조회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 후 용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라. 주요 기타 사항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용자금의 최대 20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4년 용자금 예산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용자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은 용자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90일(연장 30일 포함) 이내에 용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용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용자 예비승인 기업은 용자 승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 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www.ecosq.or.kr>, 에코스퀘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용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용자금 사용 내역, 용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용자승인 포기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 기술원은 용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용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 용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용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완료보고 제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용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용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필증	<p>용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p> <p>(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 ('을' 지), 위험물 제조소 등 필증</p>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용자 지원 시
6	기타 용자 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 지출 증빙	

- 붙임 1.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신청서 서식.
 2. 용자 예비승인서. 끝.

붙임 1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신청 서식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미세먼지시설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견기업 ▼ 대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종, 대기 *종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 내용	용자신청 목적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 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 0 0		전화 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입, 미확정 값은 예상치 기입 가능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_____일, 1일 평균_____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2. 추진 계획

미세먼지 감축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개선에 따른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저감 효과·효율 상세 설명 - 해당 설비가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미세 먼지 저감 예상 수치를 입력(수치는 설비 계약서(시공사 또는 판매사 보장수치) 또는 연구자료 등 명확한 근거 필요)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토목공사	부지조성공사
저감시설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SCR 설비, SNCR설비, 기타 저감설비
기타시설	전기공사, 소방공사, 철골구조물, 기타 건축공사
설계컨설팅	설계컨설팅, 설계비, 공정컨설팅, 공정 및 설계 컨설팅, 기타
기타비용	기존설비 철거비, 기타

붙임 2

용자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용자 예비승인서		
2020-4110-1234-0	2020-05-08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청정대기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미세먼지시설자금	
용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예비승인내용	예비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용자금사용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중요사항				
<p>1. '예비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p> <p>2. 용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용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3. 용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p> <p>4. 용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용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강제회수</p> <p>5. '시설'에 대한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p> <p>6. 최초인출기간 내 용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용자승인 취소</p> <p>7. 사용기간 내 용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p> <p>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용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용자지원 불가.</p> <p>9. 당해연도 용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용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용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용자금의 지원이 가능</p> <p>10. 용자승인 기업은 용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용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p>				
<p>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을 예비승인합니다.</p> <p>발급일 2020-08-14</p>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출력일 0000-00-00				